#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유상범·구자근·송석준

임종득 • 박충권 • 엄태영

정점식 • 이철규 • 김예지

조정훈 · 김도읍 · 배현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 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 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 "정보시스템을"을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의 안정 성을 강화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게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의 안정 성을 확인하고 장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현황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 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장애 가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행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 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 책 수립ㆍ시행) 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 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 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 <삭 제> 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 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 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 •대응 등) ① 행정기관등과 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 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관 련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 관에게 행정적 • 재정적 • 기술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관 련 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장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현 황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개선 필요 사 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행정안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⑤ 행정기관등과 국회·법원·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 우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알려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 관등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① <u>그 밖에</u> ------

\_\_\_\_